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26 - 1912호

2026년 하반기 금천구 홀몸어르신 맞춤형 보린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금천구는 저소득 홀몸어르신(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동체주택인 **홀몸어르신 맞춤형 보린주택 내 공실세대 총 7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홀몸어르신은 신청서 제출 전에 **공급개요, 신청자격 등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신청 서류의 반환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주택이란?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에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갖추고 있고, 관리규약이 마련된 주택임

※ 공동체 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공유공간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홀몸어르신 맞춤형 보린주택 모집 개요

공급주택 : 총 7세대

구 분	동	소 재 지	모집세대	동 호수	비고
보린주택(1호)	독산2동	금천구 독산로47가길 38	2세대	201호, 302호	
보린두레(2호)	시흥3동	금천구 시흥대로24길 50	2세대	304호, 404호	※공용거실
보린햇살(3호)	독산2동	독산로56길 18-10	1세대	503호	
보린희망(5호)	가산동	시흥대로 149가길 32/30	1세대	501호	
보린행복(6호)	시흥1동	독산로27길 44	1세대	501호	

공급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거주지 실태조사	선정심의 당첨자 발표	호실추첨 공동체교육	계약 입주
'26.11.19.(목) ~'26.12.7.(월)	'26.11.24.(화) ~'26.12.7.(월)	'26.12.8.(화) ~'26.12.11.(금)	'26.12.14.(월) ~'26.12.18.(금) '26.12.23.(수)	'27.1.7.(목)	• 계약 '27.1.18.(월) ~'27.1.19.(화) • 입주 '27.2.1.(월) ~'27.3.31(수)
(금천구SH) 홈페이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금천구	금천구	금천구 SH공사	SH공사

❍ **공동체교육 : 호실 추첨 후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에 참여해야 함**

※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문가(SH 코디네이터)가 진행

❍ **상기 일정은 입주자 선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자로 최종 선정함

(성별 균형 및 독립된 주거 생활 가능 여부 등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입주자 최종 결정함)

주택사전공개

❑ 일　　시 : 2026. 11. 24.(화) ~ 12. 7. (월) 10:00~17:00

❍ 보린주택 해당 호점의 관리실을 경유 후 안내에 따라 주택 방문

☎ 문의처 보린주택 1호점　070-4530-1577, 보린두레주택 2호점 070-8150-1576, 보린햇살주택 3호점 070-8950-1577, 보린희망주택 5호점 070-8957-1577, 보린행복주택 6호점 070-8150-8964

❍ 현장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외부환경(생활여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함.

치매검사

❑ 일　　시 : 2026. 11. 24.(화) ~ 12. 7. (월)

❑ 장　　소 : 금천치매안심센터(시흥대로 123길 11, 독산1동주민센터 7층)

☎ 02-3281-9082

❑ 입주 신청 시 치매안심센터에 예약 후 내방하여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함.
(결과는 구청에서 일괄 받음)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65세 이상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단, 재계약 시점에 보린주택의 입주자격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임 대 가 격

❑ 보린주택(1호점) : 금천구 독산로47가길 38 (독산2동)

호수	세대별 면적(㎡) 전용면적	방개수 (실)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비고
201호	14.44	1	10,260,000	57,300	
302호	16.06	1	12,010,000	67,000	

❑ 보린두레주택(2호점) : 금천구 시흥대로24길50 (시흥3동)

호수	세대별 면적(㎡) 전용면적	방개수 (실)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비고
304호	15.36	1	12,550,000	104,700	여자
404호	15.36	1	12,550,000	104,700	남자

❑ 보린햇살주택(3호점) : 금천구 독산로56길 18-10 (독산2동)

호수	세대별 면적(㎡) 전용면적	방개수 (실)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비고
503호	28.86	1	13,120,000	170,900	

❑ 보린희망주택(5호점) : 금천구 시흥대로149가길 32/30 (가산동)

호수	세대별 면적(㎡) 전용면적	방개수 (실)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비고
501호	25.06	1	11,190,000	145,600	

❑ 보린행복주택(6호점) : 금천구 독산로27길 44 (시흥1동)

호수	세대별 면적(㎡) 전용면적	방개수 (실)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비고
501호	24.15	1	13,930,000	181,500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기본요건 및 순위

❑ 입주대상자 기본요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 11. 19.) 현재 금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1961. 11. 20. 이전 출생)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 자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 제3호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보장 결정중인 자)

► 1인 가구로서 독립된 주거 생활(단독취사, 혼자거동 등)이 가능한 자

► 보린주택 입주자 관리규약 준수 및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는 자

※ 주민등록상 별도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인 가구로 인정하지 않음 (사실 이혼 인정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보린주택 거주자 중 주택정비사업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타 보린주택 입주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에 대하여 공실세대 범위 내에서 최우선으로 선정

(최우선 선정 대상자가 공실세대 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① ~ ④ 기준을 순차 적용)

※ 최우선 선정 후 잔여 공실세대는 일반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을 순차 적용하여 선정

①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자　② 지하.반지하 거주자

③ 금천구 전입일이 빠른 자　④ 생년월일 빠른 자(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원」(=세대)** : 아래(①~⑤) 대상자로 구성(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

구 분	내 용	비 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신청 가능**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단, 태아는 세대원 수에만 포함. 자격검증대상 아님)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대상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11. 24.(화) ~ 12. 7.(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서류	세 부 내 용 ★공고일(2026. 11. 19.) 이후 발급분 서류 제출	발급처	부수
① 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 장소(동 주민센터)에 비치	신청자 작성 및 제출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③ 무주택 서약서	• 양식은 접수장소(동 주민센터)에 비치		
④ 치매검사 결과지	•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에 유선 예약 후 내방하여 검사해야 함 검사결과지는 구청에서 일괄 받음(치매안심센터 ☎ 02-3281-9082) - 치매검사기간 : 2026. 11. 24.(화) ~ 12. 7.(월)		
⑤ 거주실태 확인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 주무관 또는 조사 공무원	공무원 작성	1부
⑥ 입주자 조사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 주무관 또는 조사 공무원		
⑦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신청자	1부
⑧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전체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 포함)	신청자	1부
⑨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발급(상세내역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신청자	1부
⑩ 신분증	•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 자녀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신청자	1부

4 선정결과 발표

당첨자 발표

❑ **발 표 일 : 2026. 12. 23.(수)** (※입주자 선정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SMS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 당첨자의 주소/이메일/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함.
- ❍ 선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 변경, 거소 이동 등 개인 사유로 인한 미확인과 그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예비자 발표

❑ **예비자발표 : 당첨자 발표일과 동일**

- ❍ 최초 당첨자의 미계약·미입주 등으로 **해당 모집공고 대상 공실세대에**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공급함.
- ❍ 예비입주자 소진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모집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 해당 모집공고에 따른 **예비자 순번의 효력**은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호실추첨 · 공동체교육

❑ **일 시 : 2027. 1. 7.(목) (예정)**

❑ **내 용 : 호실 추첨 후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 진행**

❑ **추첨장소 : 금천구청 지하 1층 금천에코교실**

- ❍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은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호실 추첨 일시와 장소는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추후 일정·장소 변경 가능)**
- ❍ 호실 추첨 미참여 시 호실은 임의 배정됩니다.
- ❍ 주택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하며, 단일 세대의 경우에는 추첨을 생략합니다.
- ❍ 추첨 결과 배정된 호실은 변경하거나 교환할 수 없습니다.

5 계약 및 입주

❑ **계약일시 : 2027. 1. 18.(월) ~ 1. 19.(화)**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연결)

❑ **계약금액 : 선정된 주택 임대보증금의 10%**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내방시	① 계약자 신분증(실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계좌 이체 확인증 등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제3자 대리인 내방시	①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② 신청인의 신분증, ③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④ 인감도장 ⑤ 대리인 신분증

※ 계약 일정은 SH에서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계약 시 공동체주택 의무사항(공동체규약 제정 및 공동체 공간 운영, 공동체 활동 등) 알림 및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등 각종 서류 작성

❑ **입주기간 : 2027. 2. 1.(월) ~ 3. 31.(수)**

❍ 잔금 납부 후 해당 센터와 날짜 협의하여 입주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금천주거안심종합센터(☎02-3668-5013)**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 (주요사항 예시)

- 금천구 2년 이상 거주,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1인 가구 및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등 자격사항이 신청접수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입주 전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환 또는 대출목적물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6 유의사항

【주택 및 임대조건】

- 이 주택은 홀몸어르신 전용 공공주택으로 본인 외의 다른 구성원은 함께 입주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전용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또는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요금은 입주자 부담이며, 주민공동시설 사용에 따라 수도료·전기료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주택으로서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 입주자는 공동체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하수도법 제2조,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 제34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거나 구조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장기보수 또는 철거 후 신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공공임대주택의 변경 또는 이주를 요구하면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전 공급현황,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지하·반지하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상 표기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 전입일자는 주민등록초본상 확인 가능한 최종 금천구 전입일자만 인정하며, 말소된 경우에는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은 모두 만 연령 기준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 불참, 주택 미선택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입주대상자)는 정해진 계약기간 내 해당 센터와 임대차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SH금천주거안심종합센터 문의 ☎ 02-3668-5000~1)

【입주자격 및 계약갱신】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계약기간 중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에도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기존 임대주택 및 대출 관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명도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대상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불가하며 기존 대출금은 입주 전까지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5세 이상 홀몸어르신(보린)주택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을 통해 입주보증금의 90%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므로,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02-2627-1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중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SH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같은 법 제49조의3),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9조의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57조의3).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및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신청접수 관련]**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02-2627-1981)**

❑ **[주택공개 관련]** 보린 1호점**(☎ 070-4530-1577)**, 보린 2호점**(☎ 070-8150-1576)**, 보린 3호점**(☎ 070-8950-1577)**, 보린 5호점**(☎ 070-8957-1577)**, 보린 6호점**(☎ 070-8150-8964)**

❑ **[계약 관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02-3410-8562, 8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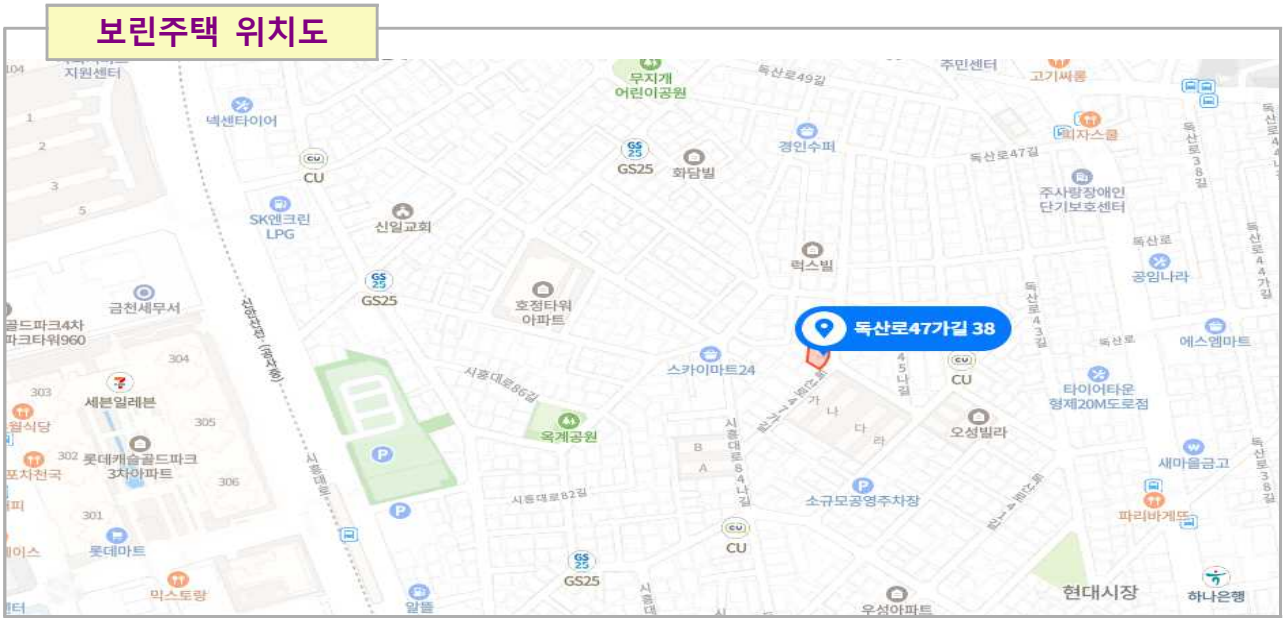
❑ **[입주 관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금천주거안심종합센터**(☎ 02-3668-5013)**

❑ **[당첨 확인]**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별도 안내

〔참고〕 위치도 및 주택사진 ※ 아래 사진은 참조용으로 각 동·호수별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합니다.
(사전 주택공개기간에 한해 방문 가능)

❍ 장소 : 보린주택(1호점)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47가길 38]

보린주택 위치도



❍ 장소 : 보린두레주택(2호점)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24길 50]

보린두레주택 위치도



❍ 장소 : 보린햇살주택(3호점)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56길 18-10]

보린햇살주택 위치도



❍ 장소 : 보린희망주택(5호점)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49가길 32/30]

보린희망주택 위치도



❍ 장소 : 보린행복주택(6호점)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7길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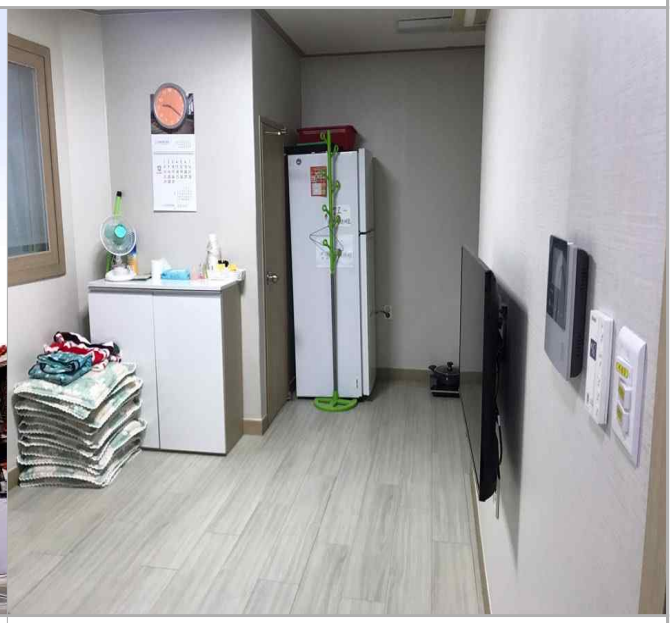
보린행복주택 위치도



보린주택(1호점) 사진



전경사진



주민공동시설



방 내부



화장실

보린두레주택(2호점) 사진



전경사진



주민공동시설



방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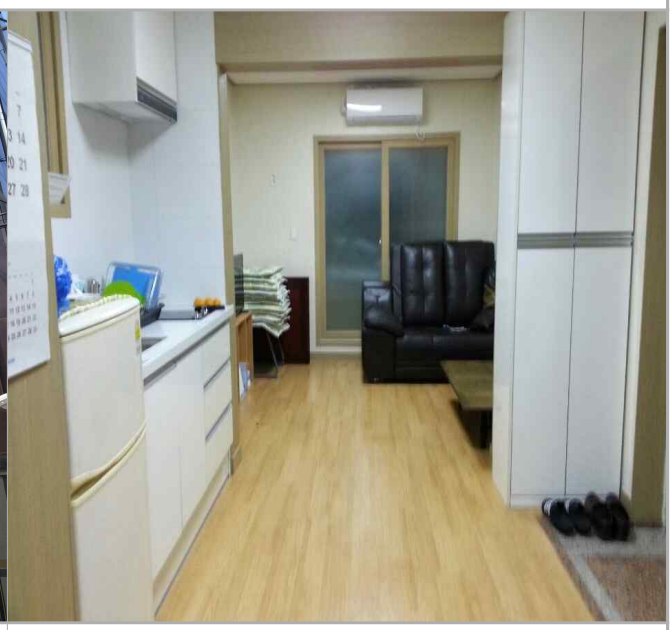


화장실

보린햇살주택(3호점) 사진



전경사진



주민공동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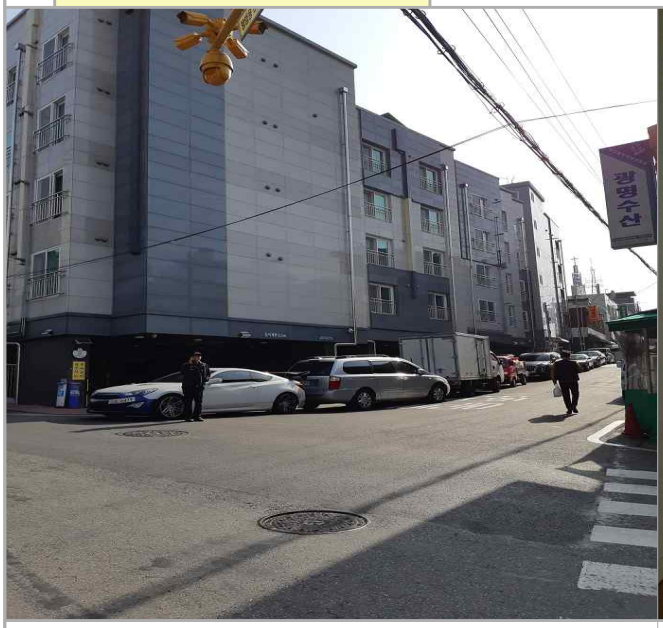


방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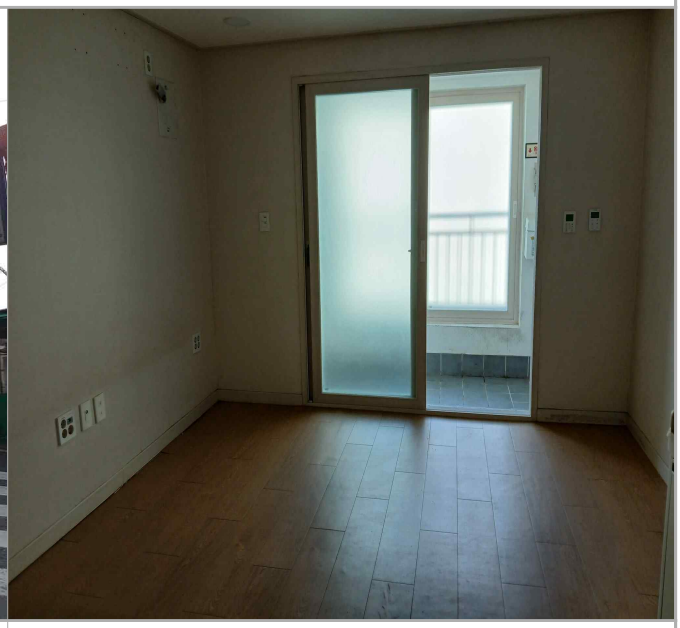


화장실

보린희망주택(5호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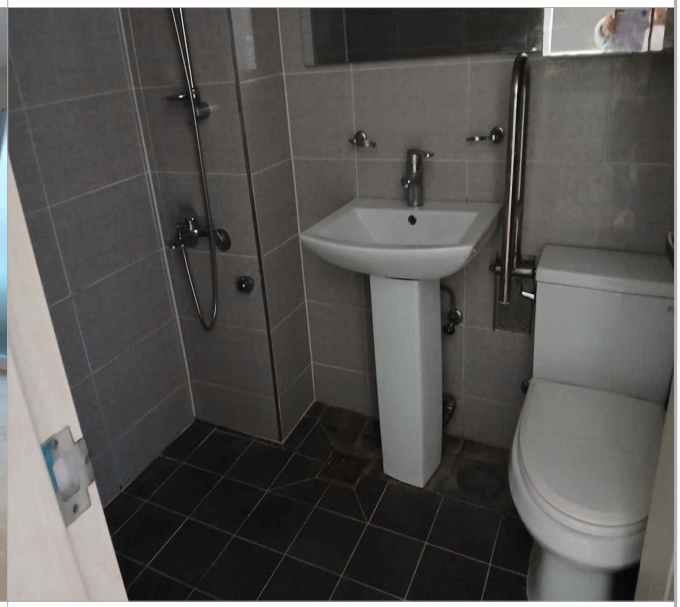
전경사진



주민공동시설



방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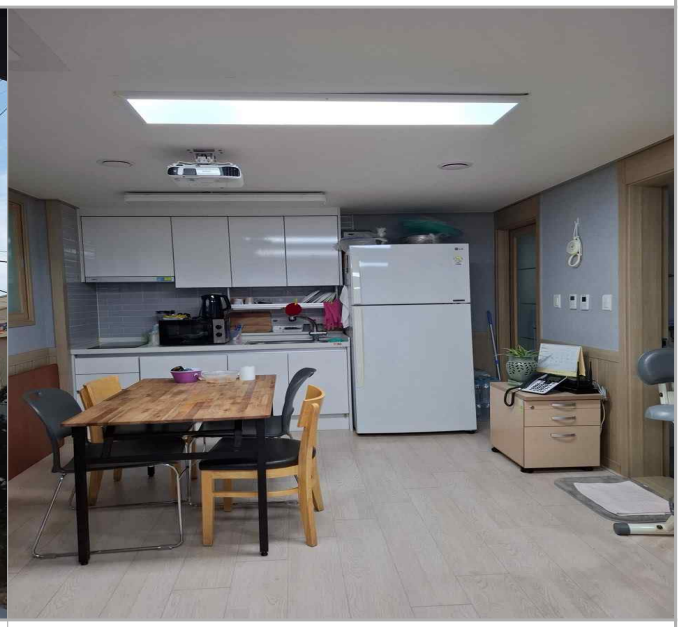


화장실

보린행복주택(6호점) 사진



전경사진



주민공동시설



방 내부



화장실

붙임 1

공공원룸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 택 신청유형	보린주택(□ 1호점 □ 2호점 □ 3호점 □ 5호점 □ 6호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금천구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금천구전입일**	**년 월 일**	
			서울시전입일	**년 월 일**	
신청자격	□ 무주택				
	□ 맞춤형 생계급여 □ 맞춤형 의료급여 □ 맞춤형 주거급여				
지하반지하 거주여부	□ 지하 □ 반지하 (*증빙서류 제출 필요)				

보린주택 예비자 통합 관리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홀몸어르신 공공원룸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본인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세대주) (인)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작 성 자					
소속		직급		서명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보증보험 가입),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본인(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본인		-				-	
		-				-	

주)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붙임 3

무주택 서약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서약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붙임 4

거주실태 사실확인서

금천구 홀몸어르신 보린주택 입주신청자 _____ 는

(_____도 로 명 주 소_____)_ **지하 / 반지하 / ◯층**에 거주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 해당 유형에 표시

년 월 일

통 장 확 인	소속	해당 동, 통 기재	통장	성명		(인)
동주민센터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거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지 현장사진 2부 첨부 요망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보린주택 입주신청자 조사표 (주택상태 등)

❑ 신청자 현황

○ 성　　명 :　　(남/여)
○ 생 년 월 일 : 19　　년　　월　　일생(만　　세)
○ 주　　소 :
○ 연 락 처 :
○ 주 택 정 보 : 지하/반지하, 보증금　　만원/월　　만원
○ 금천구전입일 :　　년　　월　　일

❑ 조 사 표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구체적으로 기록
주택 상태	① 지하/ 반지하/ 옥탑/ 벌집/ 기타 ② 화장실 및 주방 공동사용여부 ③ 주택의 노후화 정도 1) 채광, 곰팡이가 가득함 2) 난방시설 고장 등 불량 3) 단열상태가 불량하고 도배 시급	
공동 생활	① 성격이 원만하여 **공동생활에 잘 적응**하고 타인에게 피해 줄 가능성이 없는가? ② **입주 후 관리규약 지키고,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건강 상태	①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여 밥을 혼자 지어 먹을 정도로 생활이 가능한가? ② **정신질환**(우울증 및 약물복용)·알콜 중독,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료받고 있는가?	
가족 관계	① **알콜 중독과 폭력성이 있는 자녀 또는 가족이** 있는가? ② 자녀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외부인이 많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가?	

년　　월　　일

조사 공무원	성명　　(인)

작성시 참고용

보린주택 입주 신청자 조사표 [주택상태 등]

❑ 신청자 현황

○ 성　　명 : 이 ○ ○ (여)
○ 생년월일 : 1935년 00월 00일생(만 ○세)
○ 주　　소 :
○ 연 락 처 :
○ 주택정보 : 월세/보증금　1,000만원/월　10만원
○ 금천구전입일 : 1995년 3월 1일

❑ 조사표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구체적으로 기록
주택 상태	① 지하/ 반지하/ 옥탑/ 벌집/ 기타 ② 화장실 및 주방 공동사용여부 ③ 주택의 노후화 정도 1) 채광, 곰팡이가 가득함 2) 난방시설 고장 등 불량 3) 단열상태가 불량하고 도배 시급	-1층에 거주, 월세 (1000만원/10만원) -햇빛이 잘 안 들어오며 우풍이 심해 겨울에 많이 추워 전기장판을 깔고 지내신다고 함
공동 생활	① 성격이 원만하여 **공동생활에 잘 적응**하고 타인에게 피해 줄 가능성이 없는가? ② **입주 후 관리규약 지키고,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금천○○복지관에서 16년정도 다녔으며 노래, 무용등을 배우고 있으며 월,화는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함 -건강을 위한 운동할 겸 복지관에 다니고 있다고 함
건강 상태	①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여 밥을 혼자 지어 먹을 정도로 생활이 가능한가? ② **정신질환**(우울증 및 약물복용)·알콜 중독,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료받고 있는가?	-당뇨, 고혈압으로 월1회 이장교내과 다니고 있으면 잘 관리하고 있음 -다리에 힘이 없어 힘들다고 하지만 거동하는데 이상 없음
가족 관계	① **알콜 중독과 폭력성이 있는 자녀 또는 가족이** 있는가? ② 자녀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외부인이 많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가?	- 배우자와 사별 - 자녀5명이지만 연락은 하지 않으며 자녀들도 통화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고 함.

년　　월　　일

조사 공무원	성명　　○ ○ ○　　(인)

※ [별 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분		항 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 지방세정 자료

		및 주택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자산항목 산정방법

구 분		자산 기준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에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 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u>자동차가액 기준</u>을 충족하여야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제외)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 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 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 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 · 군 · 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8.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9. 매매 외 상속 ·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